

한국공정경쟁협회,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5월 19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학국 독점국장을 초청, 본 협회 회원 및 비회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방안」(공정위 안 P.15~16 참조)과 현재 위원회에서 조사중인 「부당한 내부거래 조사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학국 독점국장은 동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하여 '87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해금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외국인의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 기피 원인중의 하나가 한국 기업에 대한 실상파악(예: 우발적 채무 발생)이 어려운 데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은 M&A를 하지 않고 기업의 자산일부를 인수하는 데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분리하여 판매·교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고자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지주회사의 허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첫째,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부채에 의한 자회사 지배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직접상호출자를 금지함으로써 부실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고 가공자본에 의한 부채비율을 충족하거나 계열기업 확장을 방지하여 지주회사의 정착이 가능토록 하고, 셋째,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함으로써 소액자본에 의한 계열기업의 확장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한편, 지주



회사의 소유분산을 유도하도록 하고, 넷째,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의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기업풍토가 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정착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30대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토록 하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차입 억제 및 계열회사의 독립경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8년 4월 27일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방안을 작성하였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 6월말 또는 7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쟁점이 되어 온 자회사에 대한 50% 이상의 지분율과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완전 해소 조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허용 방안에 대하여 학계나 업계 등은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에 따른 제한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